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문진석 · 강준현 · 이주희
손명수 · 이정문 · 박정현
이재관 · 이연희 · 조승래
김교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 제5항 · 제7항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바에”를 “설치 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바에”를 “설치 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바에”를 “설치 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적절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수급실태조사에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급실태조사의 실시로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 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u>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 ----- ----- ----- ----- -- <u>설치 기준에</u> ----- -----.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u>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u>설치 기준에</u> ----- -----, ----- ----- ----- -----.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u> 따라 자전거 주차	③ ----- ----- ----- ----- ----- ----- ----- ----- -- <u>설치 기준에</u> -----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수급실태조사에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급실태조사의 실시로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④ (생 략) <u><신 설></u>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